

DECENT LEGAL UPDATE | CORPORATE GOVERNANCE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2027년 상장회사 준비사항

적용 대상부터 소집·출석·의결권 행사,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까지

2026. 09. | DECENT 법률사무소

01 KEY ISSUE

2027년 1월 1일,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무 대상: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의무 개최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시행 전에 적용 대상과 운영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 유형별 적용 범위

구분	2027년부터 적용되는 내용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	의무 대상은 아니나,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로 개최 가능
비상장회사	이번 상장회사 특례에 따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적용 대상 확인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확인한 뒤 정관과 내부규정, 소집통지 및 출석절차가 제도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근거: 「상법」 제542조의14 ·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부칙

02 KEY ISSUE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는 참여 범위가 다릅니다

전자투표는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 자체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
기본 구조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	원격으로 총회 자체에 출석
참여 방식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실시간 의사진행 및 결의 참여
법적 출석	총회 출석과 별개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
준비 범위	의결권 행사 절차	출석·의사진행·결의 등 전체 운영

전자투표 도입 회사도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확인과 전자출석 관리, 실시간 질의·발언 및 표결, 시스템 운영과 장애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실시간 참여의 보장입니다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가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기존 의결권 행사 기능만으로 전체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상법」 제368조의4 · 제542조의14 · 제542조의15

03 KEY ISSUE

소집·운영 기준과 인력·설비를 함께 준비합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온라인 접속 시스템만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는 소집부터 결의에 이르는 기준과 절차, 운영 인력과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준비 영역	확인할 내용
기준과 절차	전자주주총회 소집·운영 기준 및 내부 업무절차
운영 인력	개최·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 분담
전산설비	출석과 실시간 의사진행·결의를 지원하는 설비
개인정보 보호	주주정보와 의결권 행사정보의 처리·보호 체계

적격 관리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에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하면, 일부 인력·물적 설비 요건을 회사가 직접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함께 점검할 문서

정관, 주주총회 운영규정, 이사회 결의 및 소집통지 문안을 검토합니다.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출석과 본인확인, 질의·발언, 표결 등 실제 운영절차가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542조의15·「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2조의6

04 KEY ISSUE

소집통지부터 기록관리까지 절차를 연결합니다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개최 사실과 출석방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자출석과 실시간 참여를 전제로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	실무상 점검사항
01 소집·접속	전자출석 신청과 접속 방법, 소집통지 기재 사항
02 출석 확인	주주 본인확인 및 대리인 출석 시 대리권 확인
03 의사진행	질의·발언 방법과 운영기준
04 표결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방식
05 장애 대응	접속 장애와 전산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06 기록관리	보존 대상 기록, 보관 방식 및 주주 열람절차

5년간 보존 · 3개월간 본점 비치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은 총회 종료 후 3개월간 본점에 갖춰 두어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542조의15 ·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부터 제42조의9까지

05 KEY ISSUE

자주 묻는 질문과 시행 전 최종 점검

Q1.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도 개최할 수 있나요?

네.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2조 원은 의무 개최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Q2. 비상장회사도 2027년부터 의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상법」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이므로 비상장회사는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이미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어도 준비해야 하나요?

네. 본인확인 및 출석관리, 실시간 질의·발언 및 결의 참가 등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추가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Q4. 외부 기관에 운영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해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과 함께 전체 운영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관·내부규정, 소집통지, 전자출석, 본인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까지 점검합니다. 실제 총회 준비 시 최신 법령과 세부 운영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14·제542조의15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시행령 및 부칙

디센트 법률사무소 | 홈페이지 칼럼 원문

본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 공포된 법령과 제공된 홈페이지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